

보도시점 2024. 12. 4.(수) 12:00 / 배포 2024. 12. 4.(수) 08:30 <12. 5.(목) 조간 >

기후테크 등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서 발생가능한 공정거래법 쟁점과 다양한 적용 사례를 제시 -
-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활동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 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통틀어 지칭

이에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한 사업활동에 대하여 경쟁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친환경 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유럽연합) 「수평적 행위 가이드라인」에 '지속가능성' 챕터 신설('23.6월) (일본) 온실가스저감 관련 경쟁법 이슈를 다룬 「그린 가이드라인」 발표('23.3월)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⁴목적, ⁴적용범위, ⁴부당한 공동행위, ⁴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기본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적용범위와 기본워칙

먼저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포함),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에서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동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등 현행 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할 점과 관련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주요 공동행위 유형과 판단기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효과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면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합의의 대표적인 유형은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유형

이 중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유형은 기술이나 비용 측면에서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가격, 생산량 등 주요한 경쟁 요소에 관한 합의나 이에 관한 정보교환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② 자율적 표준 유형

또한 "**자율적 표준**" 유형은 사업자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서비스의 종류, 품질, 규격 등과 관련하여 업계의 자율적 표준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상품·서비스에 대한 규격을 공동으로 정하여 널리 보급을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표준의 개발 및 채택 과정이 투명하고 ▲표준에 따를지 여부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차별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경우,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 혹은 사양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판단기준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표적으로 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구입강제, 경영 간섭 등), 구속조건부거래 등이 문제될 우려가 있다.

① 거래거절 유형

다만, 사업자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즉, 법령에서 정하거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합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하여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는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거래상지위 남용 유형

또한 사업자가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로의 변경을 요구 (구입강제)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경영간섭)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수단임이 인정된다면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수단인지, 비용상 합리적이면서도 덜 경쟁제한적인 수단이 없는지, 가격 혹은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한다.

유형별 사례 기반 실질적 가이드라인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 외에도 공정위 심결례, 해외 경쟁당국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선별한 대표 사례(가상사례 포함)를 예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7~8월) 및 공개의견청취(11월)를 실시 하여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별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다다 비서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준헌 (044-200-4327)
담당 무서		담당자	사무관	박주영 (044-200-4328)







붙임 기이드라인 주요 내용

공동행위

- □ (개요)「공동행위 심사기준」등 현행 법령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기후테크 산업분야에 적용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사례를 설명
- □ (유형별 사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의 유형을 공동연구개발ㆍ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 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
 - 유형별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시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및 관련 사례를 제시

78	부당성이 낮은 경우		
구분	공통기준	개별기준	
공동연구개발. 기술제휴	 참가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경우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개발의 대상이나 기간이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 경우 가격 등 중요한 경쟁요소 관련 필요범위外 정보교환 차단조치가 있는 경우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연구개발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호 라이선스 혹은 특허풀을 공정하고 타당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율적 표준	 가격 등 중요한 경쟁수단에 관한 합의나 정보교환이 미포함 ·표준 개발 및 채택과정이 투명하고 모든 사업자들의 참여가 가능 ·표준 개발 및 채택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도 표준의 채택 혹은 인증의 획득에 차별없이 접근 가능한 경우 ·표준의 준수 여부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 가능하며, 미준수 사업자에게도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경우 ·그 표준이 사업자단체의 소속사업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는 경우 		

그ㅂ	부당성이 낮은 경우				
구분	공통기준	개별기준			
	• 그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 혹은 사양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 그 표준을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증가가 상품·서비스의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				
공동생산	 • 참여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경우 • 가격 등 중요한 경쟁요소 관련 필요 범위外 정보교환 차단조치가 있는 경우 • 다른 사업자들의 참여가 자유롭고 제한이 없는 경우 	・총 생산공급에서 공동생산이 차지 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공동구매		• 총 생산비용에서 공동구매한 원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공동물류· 판매제휴		•대상 상품의 전체 공급비용에서 공동물류·판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물류·판매 외 사업활동에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			
정보교환	・참여사업자의 수 및 합계 시장점유율이 낮은 경우 ・주요 경쟁요소와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 ・해당 정보의 수집 및 공유 필요성이 높은 경우 ・정보공유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유기간이 짧은 경우 ・참여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활동 가능한 경우				

2 단독행위

- □ (개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법령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기후테크 산업분야에 적용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사례를 설명
- □ (유형별 사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제시

○ 유형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들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및 관련 사례를 제시

구분		부당성이 낮은 경우		
		공통기준	개별기준	
거래 거절	공동거래거절	• 거래조건을 제시 후 거래상대방과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자발적	• 법령에서 정하거나 사업자단체의 자율기준 등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기타거래거절			
거래상 지위 남용	구입강제	동의를 얻은 경우	• 거래상대방이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이익제공강요	· 효율성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개선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거래대금에 합리적으로	
	불이익제공	효과를 현저히 상회 하는 경우	반영 된 경우 • 경영간섭의 경우, 법령의무준수를	
	경영간섭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속 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	•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봉쇄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친환경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거나 지속적 투자를 위한 수요 확보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구매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환경적 측면의 개선을 위해 도입한 고유기술로 특정 거래상대방에 의한 전문적인 유지·보수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친환경상품의 적극적 유통 및 판촉을 위한 투자유도를 위해 유통 업자에게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하는 행위 •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업자와만 거래하는 선택적 유통의 경우 •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